

# 총액인수계약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오조이천억원  
역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프로그램  
2019-2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전자등록총액: 금 일천오백억(150,000,000,000)원  
만기일: 2024년 11월 13일

발행회사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표주관회사 : 교보증권 주식회사  
겸 인수회사

2019년 11월 11일





4. “기업실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2011. 12.)’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에 대해 수행하는 실사를 말한다.
5.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본 이중상환채권을 평가하여 부여한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6. “신용평가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를 허가 또는 인가 받은 자를 말한다.
7. “영업일”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고, 영업일이 아닌 날을 “은행 휴업일”이라 한다.
8. “이중상환채권 발행계획”은 발행회사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9년 6월 14일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계획을 말하고 그에 대한 수정, 추가, 정정, 보충 또는 변경되는 발행계획을 포함한다.
9. “인수규정”은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10. “인수단”은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11.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2.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한 투자자를 말한다.
13. “전자증권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4. “증권시장”은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15. “투자설명서”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23조 내지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16.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설정계약 및 이중상환채권 발행계획에 따라 설정되어 오조이천억(5,200,000,000,000)원을 한도로 발행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오조이천억원 역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프로그램’을 말한다.
17. “프로그램설정계약”은 발행회사 및 감시인 사이에 2019년 06월 14일자로 체결된 프로그램설정계약을 의미하며, 그에 대한 수정, 추가, 정정 또는 변경계약을 포함한다.
18.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3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19.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되었으며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인수 및 모집)**

- (1)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본 이중상환채권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인수단은 이를 수락한다.
- (2) 인수단은 다음과 같이 본 이중상환채권을 인수한다. 각 인수회사의 인수의무는 개별채무이며, 인수단은 본 이중상환채권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인수단이 각자의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인수회사	인수사채의 전자등록금액
교보증권 주식회사	금 일천오백억(150,000,000,000)원
총계	금 일천오백억(150,000,000,000)원



### 제3조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본 이중상환채권은 본 계약 별지에 첨부된 증권발행조건에 따라 각 구성된다.

### 제4조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방법)

본 이중상환채권은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발행한다.

### 제5조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에게 본 계약 체결일 및 납입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 및 보장한다.

1. 발행회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법인이고,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모든 권리능력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발행회사는 청산 중에 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려고 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
2. 본 계약은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3. 발행회사가 본 이중상환채권의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중상환채권 발행계획 및 투자설명서에는 투자자들이 본 이중상환채권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발행회사 및 본 이중상환채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이중상환채권 발행계획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할 내용은 없다.
4. 공시된 사항 이외에는, 발행회사의 수익, 운영결과, 자금, 재무 등의 경영상태 및 예상과 관련하여 중대하면서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5. 발행회사는 2019년 09월 05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의 결의 및 이사회 의 위임에 따른 대표이사의 결정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해 필요한 발행회사 내부의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 또한, 발행회사는 해당 절차에서 그 이후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조건의 변경, 발행취소 또는 발행과 관련하여 추가로 어떠한 내용의 결의나 결정을 하지 않았다.
6.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및 규정, 발행회사의 정관, 발행회사가 일방 당사자인 다른 모든 계약 및 협약 등의 어느 중대한 조항과 상충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나 제3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7. 한국거래소에 관한 사채권 신규상장신청서 작성과 본 이중상환채권 발행만 제외하고는 본 이중상환채권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8.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인수 관련 기업실사 과정에서 인수단이 요청한 자료 중 발행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그 제공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모든 중요한 점에 있어서 진실하다.
9. 발행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고 중요한 채무(우발채무를 포함한다)를 누락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에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 제6조 (확약)

발행회사는 인수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한다.

1. 발행회사는 인수단의 사전동의 없이 투자설명서를 수정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본 이중상환채권 납입금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설명서의 수정을 필요로 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발행이 완료된 후, 관련법령에서 요하는 증권발행사실보고서를 적시에 작성,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발행 후 3년간 공중의 열람에 공여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때까지 상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4.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을 발행한 이후 3년 동안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발행회사의 재무제표, 분기재무제표 및 반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인수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단에도 제출한다. 다만,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게시하는 경우 위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5. 발행회사는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인수회사에게 통보한다.

### 제7조 (인수시기)

본 계약에 의한 인수단의 본 이중상환채권 인수 의무는 본 계약상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본 이중상환채권의 납입기일 현재 진실되고 정확하며, 본 이중상환채권의 납입기일 이전에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이중상환채권의 납입기일까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선약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본 이중상환채권의 납입기일인 2019년 11월 13일에 발생한다.

### 제8조 (제서식의 작성 및 공고)

발행회사는 인수단에게 투자설명서가 수리된 날에 이중상환채권 발행계획 사본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증권효력발생일에 투자설명서를 인수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는 발행회사와 인수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게시의 방법으로 각각 게시함으로써 위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 (1) 인수단은 자본시장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이중상환채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접수일 전에 미리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가 아닌 정식투자설명서를 의미함)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문투자자와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3)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 (수수료)

- (1) 발행회사는 수수료로서 본 이중상환채권 전자등록총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일천오백만(15,000,000)원에서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본 이중상환채권 납입일에 인수단의 인수비율에 따라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에는 별도의 수수료로 본 이중상환채권 전자등록총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일천오백만(1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2조의 사채인수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 (2) 제1항에서 제비용이라 함은 본 이중상환채권 청약에 필요한 제서식의 인쇄비, 청약안내공고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제11조 (발행비용)

- (1) 본 이중상환채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거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수회사의 국내 법무비용 및 국내 신용평가비용은 인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기타 발행제비용 및 발행회사가 인수회사와 독립적으로 수행한 회계·법률 등의 자문비용 및 발행회사 임직원의 출장비는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 (2) 본 이중상환채권 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2조 (전자등록신청)

인수회사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증권법 제25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신청업무를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전자등록신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본 이증상환채권의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제금융업무부로 한다.

## 제14조 (인수 및 모집일정의 변경)

발행회사가 본 이증상환채권의 인수 및 모집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이증상환채권 발행계획 또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수리지연관계로 본 이증상환채권의 인수 및 모집에 관한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수단과 합의하여야 한다.

## 제15조 (상장)

대표주관회사는 본 이증상환채권의 모집, 매출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출시점에 한국거래소에 본 이증상환채권에 관한 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6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2. 주영업의 폐지,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또는 정지
3. 영업목적의 변경
4.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5.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6.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제17조 (발행대금의 사용목적)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 발행대금을 투자설명서의 자금사용 목적의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8조 (책임부담)

- (1)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임직원에게 손해(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포함)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2) 발행회사가 본 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기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만약 위 문제로 인하여 인수단 및 인수단의 임직원이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이의 제기를 당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인수단 및/또는 인수단의 임직원을 면책시켜야 한다.
- (3) 발행회사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모집에 따른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단 및 또는 그의 각 임직원에게 발생한 손해(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포함)를 배상한다. 단, 발행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4) 금융위원회의 처분 또는 그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판결의 확정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화되어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행회사와 인수단은 본 이중상환채권 전자등록총액과 인수단의 수수료액의 비율로 그 책임을 분담한다.



## 제19조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 인수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
  2. 본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거래소의 증권 거래가 중단된 경우
  3. 한국거래소, 발행회사가 속하는 업종 또는 국내경제에 중요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본 계약에서 예정한 본 이증상환채권의 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인수회사는 해제 또는 해지 전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거나 또는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청구서를 제시하고, 발행회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 청구액을 지급한다.
- (3) 본 계약의 각 진술 및 보장조항, 선약조항 및 책임조항 기타 그 성질상 효력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본 계약의 각 조항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 제20조 (통지)

본 계약에 있어 모든 통보나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그러한 통보나 요청은 아래 명시한 당사자의 주소 또는 당사자 일방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소에 인편, 우편, 또는 FAX로 전달하여 당사자가 수령함으로써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모든 통지, 요청 및 기타 연락사항은 수령인이 수령장소의 정상근무시간 동안 수령한 경우, 당일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통지, 요청, 또는 기타 연락사항이라도 수령장소의 다음 영업일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발행회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소: 서울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참조: 리테일여신상품팀 김현희 차장  
전화: 02-3702-3347  
팩스: 02-3702-4909



전자우편: HyunHee.KHH.Kim@sc.com

대표주관회사  
겸 인수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참조: DCM본부 이이남 본부장

전화: 02-3771-9722

팩스: 02-6717-6901

전자우편: kyobo224@naver.com

### 제21조 (이의의 처리)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상관례에 의한다.

### 제22조 (관할법원)

본 계약 및 사채의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하며,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다음의 기명날인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발행회사 및 인수회사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발행회사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표이사 박종복



날인페이지



본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발행회사 및 인수회사는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대표주관회사  
겸 인수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해 준



날인페이지



이중상환채권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사채의 명칭: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오조이천억원 역내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프로그램 2019-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본 이중상환채권”이라 한다)
3.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채
4.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원화 금 일천오백억(150,000,000,000)원
5. 발행일: 2019년 11월 13일
6. 만기일: 2024년 11월 13일
7. 사채의 발행가액: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
8. 사채발행가액의 총액: 원화 금 일천오백억(150,000,000,000) 원
9. 사채의 이율: 연 1.82%
10. 사채의 연체이자율: 제9호에 따른 이율에 연 3%를 가산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 이중상환채권에 대한 연체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한다.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본 이중상환채권의 원금은 사채의 만기일에 전액 일시상환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 제9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단리 계산한 이자(원미만 절사)를 지급한다.
12. 사채의 중도 상환: 본 이중상환채권의 중도 상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3. 사채의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이중상환채권의 원금잔액(해당 이자지급기일에 상환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원금잔액을 말한다)에 제9호에 따른 이율을 곱하여 4로 나눈 금액을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제1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0년 2월 13일, 2020년 5월 13일, 2020년 8월 13일, 2020년 11월 13일,  
2021년 2월 13일, 2021년 5월 13일, 2021년 8월 13일, 2021년 11월 13일,  
2022년 2월 13일, 2022년 5월 13일, 2022년 8월 13일, 2022년 11월 13일,  
2023년 2월 13일, 2023년 5월 13일, 2023년 8월 13일, 2023년 11월 13일,  
2024년 2월 13일, 2024년 5월 13일, 2024년 8월 13일, 2024년 11월 13일.

14. 사채의 발행방법: 본 이중상환채권은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발행한다.

15. 프로그램설정계약 조건의 적용: 본 이중상환채권은 발행회사 및 감시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2019년 06월 14일자로 체결된 프로그램설정계약(그에 대한 수정, 추가, 정정 또는 변경계약을 포함하고, 이하 “프로그램설정계약”이라 한다)에 정한 프로그램 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본 이중상환채권의 미상환 원금잔액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모든 이중상환채권의 미상환 원금잔액 총액은 프로그램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이중상환채권은 이중상환채권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된다.

16. 사채의 순위: 본 이중상환채권은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발행기관에 대하여 이중상환청구권을 가진다.

17. Issuer Event of Default 사유에 관한 사항

가. Issuer Event of Default 사유의 발생

① 발행기관(발행기관의 청산인이나 발행기관의 이사를 포함한다)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② 발행기관(발행기관의 청산인이나 발행기관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가 발행기관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기관이 이에 동의(발행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③ 발행기관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④ 발행기관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기관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기관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⑤ 발행기관이 어느 이중상환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그 지급기일에 불이행하고 그 지급불이행이 10영업일 동안 치유되지 아니한 때
  - ⑥ 발행기관의 재산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자산의 10% 이상)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 ⑦ 발행기관이 담보유지비율테스트를 위반되고 감시인으로부터 담보유지비율위반통지를 수령한 경우로서 프로그램설정계약 제6조 제6항에 따라 담보유지비율테스트 위반이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
  - ⑧ 발행기관이 만기전 유동성 테스트를 위반하고 프로그램설정계약 제7조 제7항에 따라 만기전 유동성 테스트 위반을 해소하거나 만기전 테스트 치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⑨ 발행기관이 프로그램설정계약상 확인 및 보장사항을 위반하고 그 확인 및 보장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로서 감시인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동안 그 위반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⑩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다른 어느 이중상환채권에 대하여 Issuer Event of Default 발생통지가 발행기관에게 송부된 경우
  - ⑪ 발행기관이 「은행법」상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
  - ⑫ 발행기관이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또는 양도 처분을 받는 경우

나. Issuer Event of Default 사유에 대한 통지: 본 이중상환채권의 사채권자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기관에 대하여 Issuer Event of Default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서면통지할 수 있다. 그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모든 이중상환채권에 대하여 Issuer Event of Default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발행기관은 이 사실을 이중상환채권의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Issuer Event of Default 발생통지에 따른 효과: 프로그램설정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8. 이중상환채권 기한이익상실사유에 관한 사항

가. 이중상환채권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Issuer Event of Default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Issuer Event of Default 발생통지가 발행기관에게 교부된 이후의 날로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발행기관이 어느 이중상환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그 지급기일까지 불이행하고 그 지급불이행이 20영업일 동안 치유되지 아니한 때
- ② 상환테스트가 위반된 후 그 위반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환테스트 위반이 치유되지 못하는 경우
- ③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어느 이중상환채권에 대하여 이중상환채권 기한이익상실통지가 발행기관에게 송부된 경우

나. 이중상환채권 기한이익상실통지: 본 이중상환채권의 사채권자는, 본 이중상환채권의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기관에 대하여 이중상환채권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본 이중상환채권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서면통지할 수 있다. 발행기관은 이 사실을 이중상환채권의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이중상환채권 기한이익상실통지에 따른 효과: 어느 이중상환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발행된 모든 이중상환채권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발행기관은 미상환 이중상환채권의 원금 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9.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본 이중상환채권의 원리금(중도상환금을 포함한다) 상환업무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제금융업무부(이하 “지급대리인”이라 한다) 및 해당 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이 대행하며 취급장소 및 절차 등은 발행기관이 지급대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본 이중상환채권의 납입기일: 2019년 11월 13일

21. 본 이중상환채권의 납입장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제금융업무부

22. 기타



별지 4



- 가. 통지: 본 이중상환채권의 소지인들에 대한 통지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국문으로 간행되는 유력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나. 준거법: 본 이중상환채권은 한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다. 관할: 본 이중상환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소, 소송 또는 소송 절차의 변론과 결정 및 여하한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라. 정의: 본 이중상환채권조건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프로그램설정계약 별지 기본정의목록(이에 대한 수정, 추가, 정정, 보충 또는 변경되는 사항을 포함하며, 이를 “기본정의목록”이라 한다)에 따른다.

